



학생복지위원회 규정

제 정 일	2013. 8. 1
개 정 일	2014. 1. 1
개정차수	1차
담당부서	학생서비스과

- 제 1조 (목적) 동서울대학교 학생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심의를 위한 학생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- 제 2조 (설치) 학생복지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며, 그 구성은 위원회로 한다.
- 제 3조 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.
 ②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각 행정처·국장 및 각 학부(과)장으로 한다. (개정 2014. 1. 1)
- 제 4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.
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5조 (사업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집·분석·검토·연구한다.
 1.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 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
 2. 학생들의 복지서비스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
 3. 학생 편의시설 운영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4. 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
 5. 기타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
- 제 6조 (연구 및 실무위원 위촉) 위원회 위원 및 교직원 중에서 제5조의 사항을 연구 또는 필요한 자료 수집, 정리와 위임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총장은 연구 및 실무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제 7조 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③ 의결사항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제 8조 (운영세칙)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제 9조 (사무관장)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처에서 관장한다.
- 제10조 (간사)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위원장이 선임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